

국외여행허가 신청 안내

□ 병역의무자*는 「병역법」 제70조에 따라 25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국외여행허가 의무가 발생합니다.

*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서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18세~37세까지의 사람

□ 따라서, 올해 24세인 병역의무자가 25세 이후 출국 또는 계속하여 국외체재 및 거주하고자 할 때에는 24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

※ 병역법 상 나이(만 나이 적용 제외대상) = 현재연도 - 출생연도
(예시) 24세 = 2024년 - 2000년생 * 생일은 고려하지 않음

허가대상

구 분	24세 12월 31일까지	25세 1월 1일부터
국외에 체재 및 거주 중인 병역의무자 (2000년생)	국외여행허가 없이 자유롭게 출국 및 국외체재 가능	국외여행허가를 받고 허가기간 범위 내에서 국외 체재 가능 * 신청시기 : 24세 1월 1일 ~ 25세 1월 15일

□ 허가기준 : 병무청 누리집 참조(국외여행 목적별 허가기간 및 구비서류 상이)

※ 병무청 누리집 [병역이행안내 → 국외여행·국외체재]

□ 신청기관 : 관할 지방병무(지)청 또는 체재지역 관할 재외공관(대사관 또는 영사관)

※ '국외이주' 또는 '국외취업'은 관할 재외공관에서만 신청 가능

□ 신청방법 : 기관 방문 또는 병무청 누리집(홈페이지, www.mma.go.kr)

※ 병무청 누리집 [병무민원포털 → 국외여행/체재 → 국외여행(기간연장)허가 신청]

□ 25세 이후에도 국외여행(기간연장)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서 체재·거주할 경우 아래와 같이 처벌 및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【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 제재사항】

- 3년 이하 징역(병역기피 목적이 있는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)[병역법 제94조]
- 인적사항(성명, 연령, 주소 등) 병무청 누리집(홈페이지) 공개[병역법 제81조의2]
- 40세까지 취업 및 관허업의 인·허가 등 제한[병역법 제76조]
- 37세까지 병역의무부과[병역법 제71조]
- 여권발급 거부[여권법 제12조], 여권의 반납 및 효력상실[여권법 제19조 및 제13조]
- 입국 시 출국금지[출입국관리법 제4조]

□ 외국 국적(시민권)을 취득한 사람(선천적 복수국적자 제외)은 반드시 재외공관 (또는 출입국·외국인사무소)에 국적상실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.[국적법 제16조]

지방병무(지)청 전화번호 안내

구 분	업무 담당	
	국외여행 (기간연장)허가	국외이주자 관리
서울지방병무청	미국, 호주, 중국, 홍콩 02)820-4383 기타 02)820-4381,4382,4384	02)820-4331 02)820-4333 02)820-4335
부산울산지방병무청	051)667-5356	051)667-5324
대구경북지방병무청	053)607-6351	053)607-6471
경인지방병무청	031)240-7296,7299	031)240-7234
광주전남지방병무청	062)230-4259	062)230-4233
대전충남지방병무청	042)250-4329	042)250-4236
강원지방병무청	033)240-6285	033)240-6234
충북지방병무청	043)270-1259	043)270-1258
전북지방병무청	063)281-3257	063)281-3341
제주지방병무청	064)720-3257	064)720-3233
경남지방병무청	055)279-9356	055)279-9231
인천병무지청	032)740-2500	032)740-2500
경기북부병무지청	031)870-0257	031)870-0232
강원영동병무지청	033)649-4258	033)649-4243